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0612
결재일자	2016.6.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324호

동시행통제담당자	자치행정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부구청장
협조	행정지원과장	인사팀장	규제개혁팀장	주무관
			주무관	

상도제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행정구역(동) 변경관련 조례 일부개정 계획

■ 개정대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서울특별시동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 개정사유

- 상도제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부지내 법정동과 행정동이 혼재하여 주민불편이 예상되므로 법정동(노량진동→상도동)과 행정동(노량진2동→상도2동) 경계를 변경하고자 함

■ 개정내용

-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상도제2동 주민센터 관할 구역 변경(안 제13조 제2항, 별표2)
- 서울특별시동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 노량진동 302의 431번지외 94필지 11,843㎡을 상도동에 편입하고 노량진동에서 제외(안 개정 연혁표8)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 띄어쓰기

■ 추진일정

- 2016.6월 :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6.7월 : 구의회상정 및 공포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상도제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행정구역(동) 변경관련 조례 일부개정 계획

상도제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아파트 단지내 행정구역(법정동, 행정동)이 나뉘어지는 불편한 점이 나타남에 따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구역 관리를 위하여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 시행하고자 함

I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토지의개발·정비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관할 구역의 경계변경)

II 개정대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서울특별시동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III 개정사유

- 상도제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부지내 법정동과 행정동이 혼재하여 주민불편이 예상되어 법정동(노량진동→상도동)과 행정동(노량진2동 → 상도2동) 경계를 변경하고자 함

IV 주요 개정 내용

-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 동주민센터 관할구역 변경(안 제13조 제2항, 별표2))
 - 기존 : 상도동 중 산7-3을 기점으로 356-32, 361-56, 366-20, 186-5, 204-334를 경유 산65-194에서 상도1동 경계를 따라 414에 이르는 지역

- 변경 : 상도동 중 산7-3을 기점으로 산4-4, 356-32, 361-56, 366-20, 186-5, 204-334를 경유 산65-194에서 상도1동 경계를 따라 414를 경유 19-21에서 노량진동 경계를 따라 370-27에 이르는 지역

☐ 서울특별시동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 개정연혁표 8 신설
 - 상도제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역내 노량진동 302의 431번지외 94필지 11,843㎡을 상도동에 편입하고 노량진동에서 제외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 띄어쓰기
 - 「서울특별시동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V

향후 추진일정

- ☐ 2016.6월 : 입법예고(2016.6.2~6.22 예정)
- ☐ 2016.6월말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 2016.7월 : 구의회 상정 및 공포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상도제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아파트 단지 내 행정구역(동)이 나뉘어지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자 행정구역(동)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동주민센터 관할구역 변경(안 제13조 제2항, 별표2))

- 상도동중 산7-3을 기점으로 356-32, 361-56, 366-20, 186-5, 204-334를 경유 산65-194에서 상도1동 경계를 따라 414에 이르는 지역
→ 상도동중 산7-3을 기점으로 산4-4, 356-32, 361-56, 366-20, 186-5, 204-334를 경유 산65-194에서 상도1동 경계를 따라 414를 경유 19-21에서 노량진동 경계를 따라 370-27에 이르는 지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규칙 제9조의 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합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6. 6. . ~ 6. .) : 의견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중 규제사무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
- 5)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5. 영향평가

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 1) 많은 주민들이 선호하는 동으로 편입하여 주민들에게 만족도를 높임
- 2) 동일 아파트 단지 내 2개 행정동을 1개 행정동으로 편입하여 행정기관 이용, 주소 사용 등 주민 혼란 방지
- 3) 동일 행정동 사용으로 아파트단지 내 주민간 주민화합에 기여

나. 구 행정에 미치는 영향

- 1) 2개 행정동을 1개 동으로 관리하여 각종 공부정리 등 행정업무 처리시 효율성 증대
- 2) 동일 아파트 단지 내 행정동 분리를 예방하여 행정동 구역경계의 기형적인 선형 방지
- 3) 동일 행정동 사용으로 동일 아파트 단지 내 동일한 행정서비스 제공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상도제2동주민센터의 일부지역관할란 중 “상도동 중 산7-3을 기점으로 356-32”를 “상도동 중 산7-3을 기점으로 산4-4, 356-32”로 하고, “414에 이르는 지역”을 “414를 경유 19-21에서 노량진동 경계를 따라 370-27에 이르는 지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2]

동주민센터 설치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제13조 제2항 관련)

동주민센터 명칭	동 주민 센터 소재지		법 정 동 관 할	
	도로명주소	지 번	전자역관할	일 부 지 역 관 할
노랑진 제 1 동	동작구 <u>장승배기로28길 30</u>	동작구 노랑진동84-100	본 동	노랑진동중 13-8을 기점으로 14-37을 경유, 60-15에서 장승배기길을 따라 231-112, 232-33, 225-232, 225-281, 225-238, 325-2, 327에 이르는 지역
노랑진 제 2 동	동작구 <u>장승배기로19길 48</u>	동작구 노랑진동 302-97(302-411)		노랑진동중 노랑진 제1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상도 제 1 동	동작구 <u>상도로53길 9</u>	동작구 상도동437	상도 1 동	상도동중 1-38을 기점으로159-102, 산64, 산57, 산49 일대를 경유하여 산39-15에 이르는 지역
상도 제 2 동	동작구 <u>상도로 211</u>	동작구 상도동 25-48		상도동중 산7-3을 기점으로 산4-4, 356-32, 361-56, 366-20, 186-5, 204-334를 경유 산65-194에서 상도1동 경계를 따라 414를 경유 19-21에서 노랑진동 경계를 따라 370-27에 이르는 지역
상도 제 3 동	동작구 <u>상대로2길 11</u>	동작구 상도동 315-37		상도동중 343-1을 기점으로 상도동길을 따라 187-1, 356-156, 356-224, 356-221을 경유 대방동, 신대방동, 관악구 경계를 따라 산 75-3에서 259-35, 324-1에 이르는 지역
상도 제 4 동	동작구 <u>상대로29길 53</u>	동작구 상도동 188-81		상도동중 상도제1,2,3동장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
흑석동	동작구 <u>흑석한강로 11</u>	동작구 <u>흑석동 335-2</u>	흑 석 동	
사당 제 1 동	동작구 <u>동작대로17길 28</u>	동작구 <u>사당동 1004-52</u>		사당동중 147-3을 기점으로 사당로를 따라 321-114에서 319-44, 316-230, 303-30, 303-61, 303-111에 이르는 소도로를 경계로 한 동남지역
사당 제 2 동	동작구 <u>동작대로29길 52</u>	동작구 사당동 1136-1	동 작 동	사당동중 산1-1을 기점으로 동작대로지나 147-113에서 사당로를 따라 150-3, 140-168, 105를 경유 105-29에 이르는 지역
사당 제 3 동	동작구 <u>사당로17길 86</u>	동작구 사당동 169-12		사당동중 산 31-1을 기점으로 150-10에 이르는 사당로 이북지역으로서 사당제2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사당 제 4 동	동작구 <u>사당로16아길 6</u>	동작구 사당동 300-8		사당동중 사당로 아남지역으로 250-6을 기점으로 272-35,를 지나 278-99, 산44-7, 288-34, 300-54(공원), 산45-14, 산45-6을 경유 사당동 경계를 따라서 321-1에 이르는 지역
사당 제 5 동	동작구 <u>사당로27길 219</u>	동작구 사당동 228-11		사당동중 사당 제1, 2, 3, 4동장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
대방동	동작구 <u>여인대방로44길 20</u>	동작구 대방동 501-2(350-8,350-9)	대 방 동	
신대방 제 1 동	동작구 <u>신대방길 72</u>	동작구 신대방동 604-8		신대방동 중 640을 기점으로 698, 시흥대로에서 대방로를 따라 710 아남지역과, 492-200에서 산144-3을 지나 도림천에 이르는 이북지역
신대방 제 2 동	동작구 <u>여인대방로24길 106</u>	동작구 신대방동 355-9		신대방동 중 신대방 제1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2] 동주민센터 설치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제13조 제2항 관련)					[별표2] 동주민센터 설치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제13조 제2항 관련)				
동주민센터 명 칭	동주민센터소재지		법정동 관할		동주민센터 명 칭	동주민센터소재지		법정동 관할	
명 칭	도로명주소	지 번	전지역 관 할	일부지역관할	명 칭	도로명주소	지 번	전지역 관 할	일부지역관할
상도 제2동	동작구 상도로 211	동작구 상도동25-48		상도동중 산7-3을 기점으로 <u>356-32</u> , 361-56, 366-20, 186-5, 204-334를 경우 산65-194에서 상도동 경계를 따 라 <u>414에 이르는 지 역</u>	상도 제2동	동작구 상도로 211	동작구 상도동25-48		----- ----- <u>산4-4</u> <u>356-32</u> ----- ----- ----- 414를 경우 19-21 에서 노량진동 경 계를 따라 370-27 에 이르는 지역

서울특별시동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동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상도제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2개 법정동(노량진동, 상도동)을 포함하여 진행됨에 따라 입주시 주민혼란을 예방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사업구역 내 노량진동을 상도동으로 편입하고자 법정동간 경계조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개정연혁표 8 신설

- 상도제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역내 노량진동 302의 431번지의 94필지 11,843㎡을 상도동에 편입하고 노량진동에서 제외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 띄어쓰기

- 「서울특별시동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규칙 제9조의 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합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2) 입법예고(2016. 6. . ~ 6. .) : 의견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중 규제사무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
- 5)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5. 영향평가

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 1) 많은 주민들이 선호하는 동으로 편입하여 주민들에게 만족도를 높임
- 2) 동일 아파트 단지 내 2개 법정동을 1개 법정동으로 편입하여 행정기관 이용, 주소 사용 등 주민 혼란 방지
- 3) 동일 법정동 사용으로 아파트단지 내 주민간 주민화합에 기여

나. 구 행정에 미치는 영향

- 1) 2개 법정동을 1개동으로 관리하여 각종 공부정리 등 행정업무 처리시 효율성 증대
- 2) 아파트 단지 내 동일 지번을 사용하여 법정동 구역경계의 기형적인 선형을 예방
- 3) 동일 법정동 사용으로 동일 아파트 단지 내 동일한 행정서비스 제공

서울특별시동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동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 명칭 및 구
역 획정 조례”로 한다.

개정연혁표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동작구 노량진동 관할구역 중 302의 431번지, 302의 432번지, 314의 44번지, 314의 47번지, 314의 49번지 내지 314의 51번지, 314의 53번지, 314의 78번지, 314의 79번지, 314의 81번지 내지 314의 83번지, 314의 93번지, 314의 95번지, 314의 96번지, 314의 109번지, 314의 115번지, 314의 117번지, 315의 2번지, 315의 3번지, 315의 35번지, 315의 39번지 내지 315의 41번지, 315의 48번지 내지 315의 50번지, 315의 52번지 내지 315의 54번지, 315의 56번지 내지 315의 63번지, 315의 65번지, 315의 67번지 내지 315의 70번지, 315의 72번지, 315의 74번지, 315의 77번지 내지 315의 79번지, 315의 82번지 내지 315의 84번지, 315의 86번지 내지 315의 91번지, 315의 93번지 내지 315의 121번지, 315의 131번지, 315의 132번지, 315의 140번지, 315의 146번지, 315의 147번지, 산30의 76번지, 산30의 77번지를 상도동에 편입하고 노량진동에서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명) 『서울특별시동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p> <p>[개정연혁표 1] (생략)</p> <p>[개정연혁표 2] (생략)</p> <p>[개정연혁표 3] (생략)</p> <p>[개정연혁표 4] (생략)</p> <p>[개정연혁표 5] (생략)</p> <p>[개정연혁표 6] (생략)</p> <p>[개정연혁표 7] (생략)</p> <p>〈신 설〉</p>	<p>(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p> <p>[개정연혁표 1] (현행과 같음)</p> <p>[개정연혁표 2] (현행과 같음)</p> <p>[개정연혁표 3] (현행과 같음)</p> <p>[개정연혁표 4] (현행과 같음)</p> <p>[개정연혁표 5] (현행과 같음)</p> <p>[개정연혁표 6] (현행과 같음)</p> <p>[개정연혁표 7] (현행과 같음)</p> <p>[개정연혁표 8]</p> <p>○ 동작구 노량진동 관할구역 중 302의 431번지, 302의 432번지, 314의 44번지, 314의 47번지, 314의 49번지 내지 314의 51번지, 314의 53번지, 314의 78번지, 314의 79번지, 314의 81번지 내지 314의 83번지, 314의 93번지, 314의 95번지, 314의 96번지, 314의 109번지, 314의 115번지, 314의 117번지, 315의 2번지, 315의 3번지, 315의 35번지, 315의 39번지 내지 315의 41번지, 315의 48번지 내지 315의 50번지, 315의 52번지 내지 315의 54번지, 315의 56번지 내지 315의 63번지, 315의 65번지, 315의 67번지 내지 315의 70번지, 315의 72번지, 315의 74번지, 315의 77번지 내지 315의 79번지, 315의 82번지 내지 315의 84번지, 315의 86번지 내지 315의 91번지, 315의 93번지 내지 315의 121번지, 315의 131번지, 315의 132번지, 315의 140번지, 315의 146번지, 315의 147번지, 산30의 76번지, 산30의 77번지를 상도동에 편입하고 노량진동에서 제외한다.</p>